

2006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945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11. 25.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11. 28.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2005. 12. 12. 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여성발전기금 조성사유

-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·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 지원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기금의 목표액300백만원(5개년 장기계획으로 조성), 매년 60백만원 적립
-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 이하로 정기예탁
- 기타 재원조성은 이자수입,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계획안은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,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을 설치하여 여성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,
 -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, 지방자치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,

- 2006년도 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60백만원씩 기금 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목표금액 300백만원 달성이후 이자 수입 등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,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등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나, 저금리 시대가 계속됨에 비추어 볼 때 기금 목표액 조성이후 적립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재원으로는 여성권익 증진사업 등에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가 어렵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단체 사업지원 등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?
- 답 :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여성단체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 되어 있으므로 여성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여성단체 사업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5. 12. 1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.